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0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동아·김용민

모경종 • 민병덕 • 박홍배

강준현 · 김문수 · 황운하

김현정 · 김승원 · 이기헌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시·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·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·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·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.

이처럼 시·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·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 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,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 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・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

우에는 시·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중앙당과 시·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, 각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·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 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중앙당에는 100명을"을 "중앙당에는 200명을"로 하고, "시·도당에는 총 100인"을 "시·도당에는 총 200인"으로 한다. 제38조제1항 중 "정책연구소(이하 "정책연구소"라 한다)"를 "정책연구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정책연구소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(이하 "정책연구소"라 한다)"로 한다.

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·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· 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	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		
제한) ① 정당에 둘 수 있는	제한) ①		
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	<u>중앙당에는 20</u>		
<u>0명을</u> 초과할 수 없으며, <u>시·</u>	<u>0명을 시·</u>		
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	도당에는 총 200인		
각 시・도당별로 중앙당이 정			
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38조(정책연구소의 설치・운영)	제38조(정책연구소의 설치・운영)		
① 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(보	①		
조금의 배분)의 규정에 의한			
보조금 배분대상정당(이하 "보			
조금 배분대상정당"이라 한다)			
은 정책의 개발・연구활동을			
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			
도 법인으로 <u>정책연구소(이하</u>	<u>정책연구소</u>		
<u>"정책연구소"라 한다)</u> 를 설치·			
운영하여야 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		
	•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		
	시・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		
	책연구소를 설치·운영할 수		
	있다.		

② 국가는 <u>정책연구소</u>의 활동 <u>③ ------제1항 및 제2항에</u> 을 지원할 수 있다.

따른 정책연구소(이하 "정책연 <u>구소"라 한다)</u>-----.